

별첨

(사)한국상담학회 준회원 가입 안내문

-상담관련분야 5학기 이상 등록한 자: 준회원 가입 가능-

한국상담학회에서는 학부과정의 상담관련 분야의 전공생들이 일정 수준의 학업을 이수하면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정관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 2015년 10월 26일(월)

1. 준회원 가입 기준 변경 내용

세칙의 조,항	정관 시행 세칙 내용	비고
제2조(회원자격) 1. 개인회원 2)준회원	(1) 대학에서 상담관련분야(전공)에 5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별표1 에 의한다.	
부칙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1항 2호 (1) 세항의 내용은 <별표1> 에 의한다.	

<별표1>

- 제2조(회원자격), 1항 2)호 준회원 “(1)대학에서 상담관련 분야(전공)에 5학기 이상 등록한 자”라 함은, 아래 표의 상담학 영역 8개 영역 중, 필수 상담이론을 포함한 5개 이상의 영역에서 영역별로 최소 1개 과목씩, 총12과목 이상, 36학점이상 개설한 학과(전공)이어야 한다.

상담학 영역			
교과목 영역	관련과목	교과목 영역	관련과목
1.상담이론 (필수)	상담이론/상담심리학/상담(심리치료)이론과 실제/상담심리학 특론/상담특강/상담과 심리요법/상담심리연구/상담심리세미나/상담연구세미나/심리치료와 고급상담이론/비교 심리치료/개인상담이론/개인상담연구	2.심리검사	심리검사/심리검사이론/심리검사실제/심리평가 / 심리진단/심리진단 및 평가/ 투사법검사/심리측정이론/고급심리측정/교육, 심리검사 및 진단/심리검사제작/아동심리평가
3.집단상담	집단상담/집단상담이론/집단상담연구/ 집단상담 및 치료/고급집단상담 및 심리치료/ 집단치료/집단과정/집단상담실제/집단상담실습/ 집단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집단상담수퍼비전	4.학습과 발달	학습이론/학습상담/학습과 상담 ----- 발달심리/발달심리연구/고급발달심리학/ 고급응용발달심리학
5.성격과 정신건강	성격이론/성격심리/성격이론과 상담/ 성격이론 및 적응심리/성격 및 사회성발달/ 고급성격심리학/성격연구세미나/ 사회 및 성격발달론/성격 및 개인차 ----- 이상심리/이상심리학/고급이상심리학/ 정신건강과 상담/정신병리학	6.가족상담	가족상담/가족상담이론/가족상담실제/ 가족 및 부부상담/가족 및 부부치료/ 가족치료세미나/인간관계와 가족상담론
7.진로상담	진로상담/진로상담이론/진로상담실제/ 진로지도와 상담론/생애와 진로/진로지도/ 진로 및 직업상담/	8.상담실습	상담현장실습/임상 및 상담현장실습/학교 현장실습

2. 회원가입 신청 절차 안내

1단계		2단계		3단계	
홈페이지 통해 회원가입 신청하기		교육과정 계획서 제출 (반드시 학과장 직인이 찍힌 서류 제출. 양식은 각 학교의 양식에 기준)		회원가입 여부 심사 후 개별 회신	
한국상담학회 홈페이지 주소 www.counselors.or.kr		▶제출방법 : 팩스 또는 이메일로 ①팩스 번호 02-874-7351 ②이메일 주소 webmaster@counselors.or.kr		3~5일 정도 기간 소요	
학 인 사 항	상담관련분야(전공)에 5학기 이상 등록한 자	학 인 사 항	별표1>의 상담학 영역 8개 중, 필 수 상담이론을 포함한 5개 이상의 영역에서 영역별로 최소 1개 과목 씩, 총12과목 이상, 36학점이상 개 설한 학과(전공)		
안내사항		1. 교육과정 계획서 제출 안내 : ① 개인 또는 각 학교의 학과에서 학회 사무국으로 교육과정 계획서를 매 년 1회만 제출. ② 조건이 합한 경우에 해당 학교의 5학기 이상 등록한 자의 개인회원 신청은 자동 으로 처리 됨.			

붙임 : 한국상담학회 정관 시행세칙 1부. 끝.

(사) 한국 상담 학 회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정관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자격)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 법인의 회원은 개인회원(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1. 개인회원

1)정회원

- (1)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 받은 자
- (2)준회원으로서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
- (3)준회원으로서 2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획득한 자
- (4)기타 분과학회에서 정회원으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2)준회원

- (1)대학에서 상담관련 분야(전공)에 5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별표 1에 의한다.
- (2)대학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 받은 자
- (3)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자
- (4)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교 및 상담기관에서 상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 (5)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 (6)일반회원으로서 본 학회 및 분과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120시간이상 받은 자
- (7)분과학회에서 준회원으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일반회원

- (1)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관련대학이나 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상담교육을 받은 자
- (2)학사 이상의 학위와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성직에 종사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3)상담관련분야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 (4)기타 분과학회에서 일반회원으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2. 기관회원

- 1)상담관련 학과를 개설한 학부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대학
- 2)본 학회의 정회원이 속하는 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
- 3)대학도서관 등 공공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관

3. 평생회원

개인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며 200만 원 이상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자는 평생회원이 되며 평생 연회비가 면제된다.

제3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이 법인으로부터 전문적 권익을 보호받는다.

②회원은 이 법인으로부터 주관하는 각종 학술대회, 연수의 혜택을 받는다.

③회원은 이 법인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각종 연구물을 지급받는다.

제4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
2. 회원의 사망
3. 회원의 제명
4. 회비를 3회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5조(회장의 선출) ①정관 제12조 ①항의 회장의 선임은 법인이사 및 운영위원들이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②운영위원은 본 시행세칙 제10조 ①항에 준한다.

제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부회장의 직무) 기획사업담당 부회장은 국가자격추진위원회, 국가정책연구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기획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윤리위원회, 홍보위원회, 특별위원회, 재난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학회발전기금 조성을 담당한다. 학술사업담당 부회장은 교육연수위원회, 연차학술대회위원회, 전문가지원·관리위원회, 자격검정위원회, 학술위원회, 통합학술 및 사례연구위원회, 학회지편집위원회, 국제학술지편집위원회, 학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 유고시 잔여기간동안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9조(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계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진자의 발언요지

제10조(운영위원회) ①정관 제 29조 ①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인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직전회장, 총무이사, 차기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 각 분과학회장, 각 지역학회장으로 하며, 당연직 이사로 활동한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겸직한다.

제11조(위원장 선임 및 임기) 각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차학술대회위원장은 1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보선) 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에는 회장이 선임하며, 그 보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각 위원회는 회장과 협의하여 운영세칙 또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결의를 받아 집행하며 그 결과를 년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각 위원회의 업무수행에서 발생하는 재정은 이 법인에 귀속된다.

제14조(위원회) 정관 제29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연수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자격 취득 및 갱신관련 연수 주관, 연수기관 및 인증기관 관리 등 회원의 전문성 신장

을 위한 교육과 연수의 직접 시행 및 관리업무

2. 국가자격추진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학회 자격증의 공인화 또는 국가자격증화 추진 등 학회자격증의 법제화 업무

3. 국가정책연구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상담관련 국가 또는 공공 정책 연구, 제안. 공공정책 관련 국민, 정부, 정치인, 학회원의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등 학회의 공공서비스 제고 업무

4. 국제교류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해외 저명학자 초청,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제학회(APA, ACA, ACES 등)와 교류협정 체결 및 시행, 국제학회의 지역 챕터 구성, 국제학술지 지원 업무 등 국제학술교류 등 학회의 국제화 업무

5. 기획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학회 발전방안 기획, 신규 분과학회 설립, 학회의 교육, 연수, 자격검정, 자격관리 등의 시스템화 등 학회의 기획/혁신 업무

6. 대외협력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정부, 국회,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 대외 기관과의 상호협력업무, 학회 및 전문상담사의 사회적, 사회적 인식 및 인식 제고, 대외협력 네트워크 DB 제작 및 관리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업무

7. 연차학술대회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연차학술대회 개최

8. 윤리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전문가 윤리 관련 제소 처리, 회원 및 전문상담사의 품위 고취 등 회원의 전문가 윤리 의식 고취 업무

9. 전문가지원·관리 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전문상담사 자격 부여, 유지 및 갱신 지원, 전문상담사 DB 제작 및 관리, 전문상담사 취업지원, 국가 및 공공사업 파견지원 등 전문상담사 지원 및 관리업무

10. 학술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학술상 제정, 학술상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연차대회 학술 업무(심포지움, 워크숍, 학술 논문/포스터 등) 지원, BBLS 운영, 상담관련 전문서적 기획 및 간행 등 회원의 학술수준 제고 업무

11. 학회지편집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상담학연구' 원고 수집, 심사, 발간, '상담학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 등 학술지 편집업무

12. 특별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학회에서 특별히 주어진 활동 추진

13. 홍보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e-소식지, 홍보자료 발간 등 대내홍보, 상담관련 잡지발간, 언론사 제휴 강의 기획 등 대외홍보, 홍보 네트워크 관리 등 학회의 대내외 홍보업무

14. 통합학술 및 사례연구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 기획 및 주관,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사례연구회 관리 등 실무관련 학술/사례발표회 주관업무

15. 국제학술지편집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국제학술지 JAPC 발행, SSCI 및 각종 주요 학술 DB 등재 추진 등 학술연구의 국제화 업무

16. 학생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상담관련 학과(학부, 대학원) 학생들의 학술활동, 홍보활동 및 연대 지원, 차세대 상담자(고등학생) 양성사업 주관, UCC 및 상담이야기 공모전 등 차세대 전문상담사 지원 업무

17. 자격검정 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상담학회 수련등록자 관리, 자격심사, 시험관리 등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제반 업무. 단, 부위원장은 시험관리 전담위원으로 위촉.

18. 재난대책 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국가 또는 공공재난 예방관련 제안, 사후 대책 수립 및 직접 지원 등 재난사태 관련 업무

19. 인성교육특별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업무

20. 진로교육특별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진로교육법 시행에 따른 진로교육, 진로 체험 등 진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업무

제15조(분과학회 및 지역학회)

1.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이하 동일)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00상담학회”로 한다.
2.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회칙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에서 정한다.
4. 각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회원자격은 모학회의 회원자격기준에 준하도록 한다.

5.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활동 및 사업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해야하며 정기총회에서는 구두와 서면으로 1년간의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 활동과 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
6. 모 학회는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16조(자격관리) 본회는 회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상담사 자격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1. 본회는 전문상담사 자격규정을 두어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를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2. 각 분과학회에서는 본 회의 전문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해 규정한 검정 교과목 외에 별도의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행세칙에 규정한 연수평점이상을 취득한 자는 각 분과학회의 요청에 따라 세부 전공을 적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3. 자격증의 종류는 1급 전문상담사, 2급 전문상담사로 구분한다.

제17조(연구회)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설립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회원의 필요에 따라 연구회를 결성할 수 있으며 모 학회는 연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한다.

제18조(출자방법) 본 법인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출연금품
3. 발전기금
4. 기타 수입금

제19조(경비지출) 본 법인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20조(특별회계의 사용)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회원의 회비) ①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2조(사무국 직원) 정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사무국장의 임기)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 칙

- 본 시행세칙은 2006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07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08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0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1항 2호 (1)세항의 내용은 별표1 에 의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제2조(회원자격), 1항 2)호 준회원 “(1)대학에서 상담관련 분야(전공)에 5학기 이상 등록한 자”라 함은, 아래 표의 상담학 영역 8개 영역 중, 필수 상담이론을 포함한 5개 이상의 영역에서 영역별로 최소 1개 과목씩, 총12과목 이상, 36학점이상 개설한 학과(전공)이어야 한다.

상담학 영역					
교과목 영역	관련과목	교과목 영역	관련과목	교과목 영역	관련과목
1. 상담이론 (필수)	상담이론 상담심리학 상담(심리치료)이론과 실제 상담심리학 특론 상담특강 상담과 심리요법 상담심리연구 상담심리세미나 상담연구세미나 심리치료와 고급상담이론 비교 심리치료 개인상담이론 개인상담연구	2. 심리검사	심리검사 심리검사이론 심리검사실제 심리평가 심리진단 심리진단 및 평가 투사법검사 심리측정이론 고급심리측정 교육, 심리검사 및 진단 심리검사제작 아동심리평가	3. 집단상담	집단상담 집단상담이론 집단상담연구 집단상담 및 치료 고급집단상담 및 심리치료 집단치료 집단과정 집단상담실제 집단상담실습 집단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집단상담수퍼비전
4. 학습과발달	학습이론 학습상담 학습과 상담 발달심리 발달심리연구 고급발달심리학 고급응용발달심리학	5. 성격과 정신건강	성격이론 성격심리 성격이론과 상담 성격이론 및 적응심리 성격 및 사회성발달 고급성격심리학 성격연구세미나 사회 및 성격발달론 성격 및 개인차 이상심리 이상심리학 고급이상심리학 정신건강과 상담 정신병리학	6. 가족상담	가족상담 가족상담이론 가족상담실제 가족 및 부부상담 가족 및 부부치료 가족치료세미나 인간관계와 가족상담론
7. 진로상담	진로상담 진로상담이론 진로상담실제 진로지도와 상담론 생애와 진로 진로지도 진로 및 직업상담	8. 상담실습	상담현장실습 임상 및 상담현장실습 학교 현장실습		